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이연희 · 박용갑 · 김정호
전용기 · 임미애 · 박상혁
김남희 · 한민수 · 어기구
이광희 · 서미화 · 정준호
복기왕 · 문진석 · 문금주
송재봉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.

이에,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제2항 신설).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6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이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, 연합회, 공제조합,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,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,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제76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<u><신 설></u>	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, 연합회, 공제조합,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, 자	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

동차손해배상진흥원, 「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 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 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